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거치형)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거치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6 년 1 월 5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윤 기 수

사업방법서 별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구성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거치형)		
보험종목의 구성 (생존연금의 지급형태)	기간보증부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
	종신연금형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 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2. 연금지급 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 80세		
보험 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부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종신까지
		실적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연금지급 개시연령 - 7]세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 보험료	일시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4.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보험료 : 계약 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 7년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한다. 단, 매회 납입시 최저 한도는 10만원 이상이며, 만원 단위 금액으로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이 없음

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단, 특약보험료 제외)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4. 납입보험료의 한도」, 「7.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가”」 및 「10.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가”」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단,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직전(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7.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 ① 사망 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② 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해지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4)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유지계약의 최저연금적립금기준준비금의 합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일반계정에서 부담한다.
 - ① 연금지급 개시시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② 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 중 계약소멸, 해지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 (5) 단,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증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 ① 채권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② 인덱스(INDEX)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③ 주식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④ 안정성장형(1형, 2형) :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 ⑤ 인덱스(INDEX)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주식 (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 (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1)”의 투자 대상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펀드 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 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 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항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각 펀드 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 (2)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는 “(1)”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3)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 (4) 계약자의 펀드변경
- ① 계약자는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⑤ 회사는 “①”에서 정한 펀드 이전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적립금의 0.1% 범위 이내(2,000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 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신탁보수,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자.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9.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제1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나”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2) 이 보험의 실적연금형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 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연금액 계산시 적용 비율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 중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비율은 공시비율로 한다.
- (2) 공시비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비율로 하며,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비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비율을 결정하며, 공시비율은 산출 공시기준비율의 80%를 최고한도로 한다.
- (3) 공시 기준비율의 산출

- ① 공시기준비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비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 ②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times 100$$

I : 직전 6개월간 투자 수익 E : 직전 6개월간 투자 비용

A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자산의 월말잔액

A₆ : 산출시점 직전 6개월 초 현재 운용자산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③ 외부지표 산출식(%) = B₁ + B₂ + B₃ / 3

B₁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B₂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B₃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 산출시점에서 직전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 산출시점에서 직전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 산출시점에서 직전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

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 (말잔)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 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 (4) (2)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2)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 (6)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경과 후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7)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다. 실적연금형 운용에 관한 사항

- (1)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용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 (2) 「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1보험기간과 동일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준가 산정 시 매일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해당일까지 이 보험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일반계정에서 부리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증액한다. 단, 계약 해당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 계약이 더 이상 유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까지의 제2보험기간 실적연금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비용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3)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연금 지급을 요청한 날을 연금지급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4)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연금지급 기간 내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5) 계약자(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생존연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5년 이상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라. 연금종류의 복수 선택

- (1) 계약자는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구성의 생존연금 지급형태” 중 최대 2개까지의 연금의 형태를 선택할 있다.
- (2) “(1)”에서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1)”에서 2개의 연금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액(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단, 한가지 연금 형태에 최소 30%이상의 계약자 적립액을 분할 하여야 한다.

11.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4.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연금의 형태 중 실적연금형의 연금 개시된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계약자 적립금의 차액 중 실적연금형 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3) 연금의 형태 중 실적연금형의 매년 계약 해당일이 된 경우
제2보험기간 실적연금형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

- (4)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인출수수료 포함)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단,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제1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단, 제2보험기간에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적연금형 해당 분할 금액은 제외)
- (7) 제2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액(납입후 유지비 포함) 지급이 있는 경우
-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2.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나.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 “가”에 따라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다.

라.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에 따라 계산한다.

마.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제2보험기간 중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및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9.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다. 계약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단, 제1보험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에 일반계정에서 상환일 기준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라.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실적연금형은 “나”에 따라 제1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14. 기타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펀드별 편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 및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단, 실적연금형은 제1보험기간과 동일하게 특별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제1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라.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9)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마.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일시납 보험료)로 정한다.

바. 지급여력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 포함 한다. 단, 실적연금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의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자.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